

동행·매력  
특별시 서울

# 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[www.seoul.go.kr](http://www.seoul.go.kr)

제3909호  
2023. 9. 18.(월)



**목 차**

◆ **자치법규 등**

[행정예고]

제2023-2710호 한강공원 야영·취사행위 금지구역 변경지정 행정예고 ..... 2

◆ **고 시**

제2023-416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..... 7

**자치법규 등**

[행정예고]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-2710호

**한강공원 야영·취사행위 금지구역 변경지정 행정예고**

-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서는 하천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수 질보전을 위하여 한강공원의 야영·취사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자 합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9월 18일  
서울특별시장

1. 행정예고 내용

- 공 고 명 : 한강공원 야영·취사행위 금지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행정예고
- 지정근거 : 하천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
- 주요내용 : 취사행위 금지구역 제외지역에 숙박시설 허가지역 추가

**< 한강공원 야영·취사행위 금지구역 변경 지정 >**

1. 야영·취사행위 금지구역 : 한강공원 전 지역 (다만,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)

가. 야영·취사행위 금지구역 제외지역

◦ 중전과 같음

나. 취사행위 금지구역 제외지역

◦ 음식점 허가지역

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공공행사 중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득한 행사장 내 지정구역(상수원 보호구역은 제외)

◦ 공공기관(임시시설 포함)내 식당

◦ 숙박시설 허가지역(추가)

○ 한강공원 야영·취사행위 금지구역 변경지정(안) : 붙임자료 참조

2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간

## 3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미래한강본부 운영부로 방문, 우편 및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제출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간
- 제출내용 : 의견 제출서 작성
  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  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 등
- 제출방법
  - 방문 및 우편 :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, 미래한강본부 2층 운영부 (우 04770)
  - 이메일 : naturey1@seoul.go.kr 의견 제출서 송부
- 문 의 처 :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윤지용 주무관(전화 02-3780-0809)
- 참고사항 :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'의견 없음' 으로 간주함

붙임 1. 의견 제출서(서식) 1부

2. 한강공원 야영·취사행위 금지구역 변경지정(안) 1부



**한강공원 야영·취사행위 금지구역 변경 지정(안)**

하천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수질보전을 위하여 한강공원의 야영·취사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23. 9. .  
서울특별시장

종 전(2014. 7. 3.)	변 경
<p><b>1. 야영·취사행위 금지구역 : 한강공원 전 지역</b> (다만,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)</p> <p>가. 야영·취사행위 금지구역 제외지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난지한강공원 내 캠핑장</li> <li>◦ 서울특별시에서 한강공원에 조성한 임시캠핑장 (이 경우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정한 취사방법 외의 개별취사는 금지)</li> </ul> <p>나. 취사행위 금지구역 제외지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음식점 허가지역</li> <li>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공공행사 중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득한 행사장 내 지정구역(상수원 보호구역은 제외)</li> <li>◦ 공공기관(임시시설 포함)내 식당</li> </ul> <p>다. 야영행위 금지구역 제외지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한강공원 내 지정텐트 설치구역(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)</li> </ul> <p><b>2. 금지행위 : 야영 및 제반 취사행위</b></p> <p><b>3.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1차 위반시 : 100만원</li> <li>◦ 2차 위반시 : 200만원</li> <li>◦ 3차 위반시 : 300만원</li> </ul>	<p><b>1. 야영·취사행위 금지구역 : 한강공원 전 지역</b> (다만,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)</p> <p>가. 야영·취사행위 금지구역 제외지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종전과 같음</li> </ul> <p>나. 취사행위 금지구역 제외지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음식점 허가지역</li> <li>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공공행사 중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득한 행사장 내 지정구역(상수원 보호구역은 제외)</li> <li>◦ 공공기관(임시시설 포함)내 식당</li> <li>◦ 숙박시설 허가지역</li> </ul> <p>다. 야영행위 금지구역 제외지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종전과 같음</li> </ul> <p><b>2. 금지행위 : 종전과 같음</b></p> <p><b>3.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종전과 같음</li> </ul>

중 전(2014. 7. 3.)	변 경
<p><b>4. 쓰레기 처리방법</b>                      ◦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원인자가 수리해야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.</p> <p><b>5. 기 타</b>                      ◦한강공원 야영·취사행위 금지구역 변경지정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(3780-080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	<p><b>4. 쓰레기 처리방법</b>                      ◦중전과 같음</p> <p><b>5. 기 타</b>                      ◦중전과 같음</p>

**고 시**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16호

**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**

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3년 9월 18일  
서울특별시장

- 1. 명 칭: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
- 2. 결정 근거: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
- 3. 적용 기간: 2024. 1. 1. ~ 2024. 12. 31.
- 4. 주요 내용
  - 생활임금 수준: 시급 11,436원
  - 월급 환산시 2,390,124원(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, 월 209시간 기준)
    - ※ 생활임금의 적용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
  - 생활임금 적용대상
    - ①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
      - ※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
    - ② 서울특별시 투자, 출자·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
    - ③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(시비100%)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
      - ※ 수익창출형,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적용 제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